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06. 6. 23

행정위원회

1. 審查經過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6월 5일 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6년 6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2006년 6월 22일

제12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정진)

가. 개정이유

○ 우리 구가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1단계 시범자치구로 선정됨에 따라, 구 본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 담당을 설치하는 등 복지·보건·고용·주거·문화 등 종합적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일반직 5급 증원 : 1명
 -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 일반직 6급 증원 : 10명(동사무소 +22, 구 본청 -12)
 - 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신설(22담당)
- 일반직 8급 정원조정 : 구 본청 +16, 동 -16
- 일반급 9급 정원조정 : 구 본청 + 4, 보건소 +2, 동 - 6
- 기능직 10급 감원 : 11명
 - 기능직 정원이 총 정원의 26%(기준 20% 이내)로 정원을 감원 조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의거 자치법규 제명 띠어쓰기 및 인용문에 낫표(「 」) 사용

다. 참고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03조(지방공무원단체의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조(직급별 정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253호) 제8조(정원책정기준)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1220(2006.4.5)호: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 지원기능 강화 계획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1428(2006.4.19)호: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관련 1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 예산조치 : 확보되었음
-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김찬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9486호) 제20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행자부령 제310호),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관련 지침(자치제도팀-1428호)에 근거하고 있으며,
- 증원되는 인력 중 5급 1명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전산정보과를 신설하고 재난 안전관리과와 자치행정과를 통폐합함으로써 늘어나는 1개 부서의 정원이며,
- 각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팀을 신설하고자 6급으로 정원 10명을 증원하고, 나머지 12명은 구 본청의 팀장이 아닌 6급(평주사)을 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 반면에 동사무소 정원 중 8급: 16명, 9급: 6명 도합 22명을 감원하여 구 본청으로 8급: 16명, 9급: 4명을, 보건소로 9급 2명을 정원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른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되며,
다만,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2006.6.5 통보된 서울특별시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결과 협의 통보에 의하면 종량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등 4개 자치구 모두 직급간 이동으로 행정6급의 정원책정 비율이 초과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조직체계 개편에 따라 정원책정 비율이 초과하는 사항으로 인정하되,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 「별표5」의 기준에 합치되도록 권고하고 있음.

4. 審查結果 : 原案可決